

2019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본 법인 교육장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13명 본인출석 10명
출석이사 11명 위임이사 1명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김성수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인사를 하다.

2. 회순채택

회순채택에 있어 정기이사회 회순에 의거하는데 찬성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전 회의록 내용을 낭독하다.

4. 2019년 감사보고

서경표 감사가 감사결과를 설명 후 감사보고서를 낭독하고, 참석 이사 전원 감사보고를 받고 이의 없다고 하다.

5. 2018년도 사업실적보고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2018년 사업실적에 대해 경영기획팀, 모금홍보팀, 재무관리팀, 마이크로크레딧팀, 소셜캠퍼스팀, 사회적경제팀, 미래사업팀 순으로 보고하다.

② 경영기획팀의 주요 업무 성과로는 3개 기금 신규사업 개발 및 12개 기금 유지를 통해 목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보상 수준의 조정과 다각적 의견 청취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였고, 낙후된 PC를 교체하고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전산 환경을 안정화시켰음을 설명하다.

㉔ 모금홍보팀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매체운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2019년 슬로건을 공모하였고, 후원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예우서비스를 다양화하였으며, 후원실적은 약 188백만원으로 총 604명의 후원회원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㉕ 재무관리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재무제표 표시방법 등의 결산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음을 설명하다.

㉖ 마이크로크레딧팀은 반환금의 자체기금 운영을 확정하고 대안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조직 금융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다. 주요 사업성과로는 총 127개소에 금융지원을 하였고, 52개소에 경영활성화 지원을 하였음을 설명하다. 채권관리 업무로는 69건의 시효점검과 360건의 상환관리를 진행했으며, 마이크로크레딧 채권에 한정적이던 채권관리 범위를 사회적 기업 채권까지 확대하였음을 설명하다.

㉗ 소셜캠퍼스팀은 LG전자 및 LG화학의 후원을 받아 LG소셜캠퍼스 공간을 운영하는 팀으로서, 11개소에 금융지원을 하였고, 해외벤처마킹이나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일반인 대상의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중심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을 설명하다.

㉘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36개팀을 육성하였고, 9개의 청년 소셜벤처 및 공유가게를 지원하였으며, 개인 및 팀 40인을 선발하여 교육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고, 국내 최초의 소셜벤처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㉙ 미래사업팀은 65명의 시니어에게 사회공헌 교육을 실시하였고, 10명의 보육시설 퇴소 청년을 위해 지원금과 재무상담을 지원하였으며,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환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설명하다.

② 김성수 의장이 국체공 스포츠 은퇴선수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과거에 국체공과 진행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반환금 3억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스포츠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임을 설명하다.

- ③ 김성수 의장이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마칠 것을 제안하고 참석이사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부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다.

6.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2018년 결산승인의 건

-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기관운영비와 목적사업비에 대해 보고하다.
- ㉠ 기관운영비는 전기이월 약 175백만원과 당기수입 약 461백만원, 총지출 약 480백만원으로 차기이월이 약 156백만원임을 설명,
- ㉡ 목적사업비의 경우에는 전기이월이 약 17,673백만원이며 당기수입 약 13,486백만원, 총지출이 약 9,415백만원으로 차기이월이 약 21,744백만원임을 설명하다.
- ② 황신애 이사가 멤버십 관련 회비 지출이 기부금 계정에 포함되어도 되는지 질의하다. 조태현 감사가 회비 지출을 기부금 계정에 포함해도 문제없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부합함을 답변하다.
- ③ 주인기 이사가 기관의 비전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현 이월금액인 약 15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기부금에서 확보한다면 연간 기부금 규모가 연 5~6억이 되어야 하나, 모금 확대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다.
- ④ 한찬희 이사가 퇴직급여 전액을 기관운영비에서 집행하는지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목적사업비에서도 퇴직금 일부를 충당한다고 답변하다.
- ⑤ 주인기 이사가 작년 퇴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입사 3~4년차 직원의 퇴사가 많았으며, 퇴사 이유로는 조직에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비영리 조직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학업, 전직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답변하다. 황신애 이사가 이번 높은 퇴사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비영리 조직의 경우 인사 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덧붙여 당부하다. 주인기 이사가 추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인사 소위원회를 통해 인사 문제 관련 투명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 볼 것을 제안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고려하겠다고 답변하다.

⑥ 김성수 의장이 2018년 사업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박진열 이사가 동의하고 한찬희 이사의 제청으로 본 안건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반영하여 2019년 경영목표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소셜 임팩트 확대’로 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경영기획팀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구성원 역량 개발을 체계화하며, 보상, 복리후생, 근무유형 등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소통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임을 설명하다.

㉡ 모금홍보팀은 소식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를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매체를 확대하며, 신규 홈페이지 런칭과 함께 후원회원 개발캠페인을 하고자 하며, 모금 자문위원회 조직을 통해 모금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모금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후원회원 총 805명으로부터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재무관리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를 하고자 하며, 자금운용방법 확대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마이크로크레딧팀은 총 7개 확정사업과 4개의 예정사업을 통해 약 2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심사역량, 사례관리,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장기채권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소셜캠퍼스팀은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재무적·사회적 가치측정 지표를 보완하고,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가를 양성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사회적경제팀은 육성사업과 총 5개의 확정사업 및 3개의 예정사업을 통해 총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미래사업팀은 총 7개의 확정사업 및 2개의 예정사업을 통해서 시니어 및 금융

소의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하며, 상환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2019년 예산(안)은 기관운영비의 경우에는 전기이월 약 156백만원, 수입은 약 423백만원, 지출 약 510백만원으로 차기이월 약 69백만원이 될 것임을 설명하다. 목적사업비는 전기이월 약 21,744백만원, 수입 약 9,616백만원, 지출 약 19,957백만원으로 차기이월 약 11,403백만원임을 설명하다.

② 주인기 이사가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금 담당 인력을 지원부서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지원부서에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모금 활동의 추진력을 얻고 총괄적으로 전담하고자 함이며, 현재 모금홍보팀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점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주도하여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③ 조태현 감사가 생보협회 학자금대출 반환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2012년에 생보협회의 후원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였고, 미집행잔액과 그간의 상환금 및 향후 상환될 대출금을 활용하여 청년통합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④ 박상수 이사가 기금처에게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정기적인 서면보고 외에도 일반 대중 대상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⑤ 황신애 이사가 걱정된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적사업별 운영비의 적정 수준을 분석·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금처와 목적사업 운영비 관련 커뮤니케이션 시 현 운영비 비중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 기부금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모금활동을 할지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세울 것, 기업의 사회공헌 트렌드나 정부정책에 맞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에 대해 제안하다.

⑥ 박진열 이사가 자체 사회공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관련 전담 조직

이 없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컨설팅 수수료 수입 및 기부자 모집을 유도해볼 것을 제안하다.

⑦ 주인기 이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 및 구체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성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KPI·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고려하겠다고 답변하다.

⑧ 김성수 의장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송영숙 이사가 동의하고 주인기 이사가 제청하여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다.

○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송영숙 이사, 주인기 이사, 조태현 감사의 연임, 신임 이사로 노대명 후보, 신임 감사로 이성주 후보가 추천되었음을 설명하다.

② 김성수 의장이 3명의 연임 이사 및 감사와, 2명의 신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박진열 이사가 동의하고 김종성 이사가 제청하여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다.

○ 제4호 의안 : 취업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유연근무제 도입 및 직원 휴가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취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② 김성수 의장이 취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다.

○ 제5호 의안 :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입사 전 경력 가산 기준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② 김성수 의장이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다.

○ 제6호 의안 :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2019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기본급 조정과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고 직무급 일부 조정을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② 주인기 이사가 기본급 조정 시 31호봉 이상부터 이전 대비 금액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하후상박의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답변하다.

③ 김성수 의장이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다.

○ 제7호 의안 :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제정에 따라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② 김성수 의장이 재무·회계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다.

○ 제8호 의안 : 서민금융진흥원 '복지사업지원계약' 추가계약의 건

① 안준상 본부장이 2008년, 2009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체결한 '복지사업 지원계약'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미상환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② 주인기 이사가 상환 기간 연장이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법률자문을 받아보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이미 채무 인정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기간 연장 관련 추가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3심 모두 패소하였고, 본 건 관련하여 총 세 분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세 분 모두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었음을 답변하다.

③ 송영숙 이사가 계약서상 사회연대은행이 대출수혜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상환금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상환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고, 이러할 경우 과거 판례를 볼 때 법원은 상환 면제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사업의 위탁사업자가 아닌 대출자로 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련 소송시 대출이자만으로 운영비 충당을 해 왔고, 해당 금액으로는 사업수행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음을 채무 불인정의 논거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다. 사회연대은행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해 볼 수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 및 장기간의 소요 시간,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송 추진이 부담스러움을 설명하다.

④ 한찬희 이사가 기존계약의 기간 연장인지, 추가계약인지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추가계약이라고 답변하다.

⑤ 조태현 감사가 추가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고, 안준상 지원본부장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 답변하다.

⑥ 서경표 감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미상환금에 대한 법적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사회연대은행의 소송 실익이 없어 보이며 현재는 기한을 연장하여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⑦ 송영숙 이사가 복지사업지원계약 관련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채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다른 기관과의 보조를 맞추고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기한 연장을 해야 함을 설명하다.

⑧ 한찬희 이사가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김용덕 대표상임이사가 회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상환가능성을 50%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⑨ 주인기 이사와 조태현 감사가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절차상 다른 기관과의 보조를 맞추어 정책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번 추가 계약 체결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다.

⑩ 송영숙 이사가 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는 채무를 인정할 수 없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채무 인정 판결이 있었고, 또한 법률 자문 결과 우리 기관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하므로, 다른 기관과의 공동 보조를 취하고 정책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의결 이유를 작성하기로 하다.

○ (수정) 의결주문

: 사회연대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이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먼예금관리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함)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복지사업의 미회수금은 은행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을 제외한 다른 참여기관들은 이미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향후 관계 및 참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의 ‘복지사업 지원계약’ 추가계약 체결을 승인함.

※ 의결 이유

(1) 은행이 복지사업 수혜자의 미상환금을 은행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 위 복지사업 실시 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금의 비율은 20% 정도였는데,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낮은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창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했다.
- 은행이 다른 기관들로부터 목적 자금을 받아 자금의 배분 및 회수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 해당금원의 15% 내지 20%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 그럼에도 위 복지사업은 재단의 운영비 지원은 없었고, 수혜자가 납부하는 이자(6%)를 통해서 복지사업 수행기관이 운영비를 조달하는 조건이었다.
- 이에 은행은 수혜자가 납부하는 이자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복지사업의 수행 필요성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은행은 추후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 복지사업계약서에는 을이 교부받은 지원금 중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갑 요청에 따라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제4조 제2항), 대출금으로 사용한 후 수혜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상환일에 따라 월 2회에 걸쳐 갑에게 상환받도록 하며(제4조 제1항, 별지 1 지원조건), 을이 위 각 지원금 상환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및 반

환받지 못한 미상환금액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반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을이 제4조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갑의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은행은 대손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만약 수혜자의 미상환금액에 대해 은행이 변제해야 한다고 하였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원사업을 수행할 이유가 없었다.

(2) 이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1) 복지사업자 모집 공고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출심사조건, 이율, 대출 상대방 등 대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자 등 관련 수익을 수취하였고, 3) 재단은 지원대상 복지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복지사업자의 재정능력을 평가요소로 삼아 복지사업자의 재정능력 및 자산보유현황 등이 선정 등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되는 이유는 원금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3) 그러나 1) 본 건은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창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어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 보다 높은 금리수준을 정했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 보다 낮은 6% 금리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었기에 대출조건을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할 수 없고, 2) 본 건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혜자로부터 받은 이자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운영비는 통상 대출금액의 15% 내지 20% 정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6%로는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바, 실제로 사업의 운영비는 총 대출금 35억원의 15%로 산정시 5.25억이 필요하나 사업을 최초 수행한 2008년 이후 2019년 1월까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수혜자로부터 받은 이자는 3.37억원이며, 3) 복지사업자의 재정능력 및 자산보유현황은 다른 기관들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모든 자금 등이 포함된 것인데, 당해 자산 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금원이지 본 건 등의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만약 미상환금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은행은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간과한 판단이다.

(4) 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른 점이 있어 위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재단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소송으로 다룰 경우 다른 판결

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및 대법원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 점, 소송 전담 직원 필요 등 금전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본 건은 처음부터 시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금융지원사업이므로 다른 참여기관들과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

김성수 의장이 송영숙 이사의 수정 의결주문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다.

7. 기타 보고사항

8. 폐 회

김성수 의장이 2019년 정기이사회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마친다.

2019년 02월 20일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의장 겸 이사	김 성 수
대표상임이사	김 용 덕
상임이사	박 상 금
이 사	김 종 성
이 사	박 상 수
이 사	박 진 열
이 사	송 영 숙
이 사	이 봉 주(代 김용덕)
이 사	주 인 기
이 사	한 찬 희
이 사	황 신 애
감 사	서 경 표
감 사	조 태 현